옥천군 공고 제2019 - 720호

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8월 9일

옥 천 군 수 

1. 조례명 :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개정이유

○ 자치법규 기획정비 권고(손해배상 부분) 행안부 자치법규과-2935호(2018.12.20.), 도 법무혁신담당관-8018호(2019.6.20.), 옥천군 기획감사실-13260호(2019.7.2.)에 따라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조항을 삭제하고,

○ 오타 및 띄어쓰기 사항을 정정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유지 · 관리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제11조(군민자전거의 운영)④ 삭제

○ 조례명 (띄어쓰기 적용)

○ 제1조 (띄어쓰기 적용)

○ 제5조② (근거조항 ③으로 수정)

○ 제17조② (띄어쓰기 적용)

4. 의견 제출

○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**2019년 8월 29일까지** 옥천군수(참조 : 도시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cjt90804@korea.kr

2) 주소 :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

3) 팩스 : 043-731-3243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교통과(전화 043-730-3557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충청북도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붙임

○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○ 의견서 양식 1부.

옥천군조례 제 호

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를 “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을 “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법 제5조제2항”을 “법 제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	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-- 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---------- ----------.
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	제5조(활성화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---- 법 제5조제3항 ---------- --------.
제11조(군민자전거의 운영) ① ~ ③ (생 략) ④ 군민자전거 이용중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. ⑤·⑥ (생 략)	제11조(군민자전거의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관리의 위탁) ①（생　략）	제17조(관리의 위탁) ①（현행과 같음）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자격, 선정방법 등은 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	② ----------「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----------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○ 조 례 명 :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 례 안	의　　견